

차의과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		제2차 회의록	
일 시	2015. 02. 25(수) 10:00 ~ 11:00	장 소	CHA BIO COMPLEX B113
참석의원	문창진 의원, 정광희 의원, 박재범 의원, 오일숙 의원, 최근영 의원, 육기환 의원		
불참의원	권성원 의원(외과), 권성원 의원(비뇨기과), 배진건 의원, 손명세 의원, 김동훈 의원		
간 사	강창호 기획실장, 이정훈 기획처 대리, 김영한 기획처 주임		

I. 안건

-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칙, 제 대학원 학칙 개정

II. 회의내용

- 문창진 의장(이하 의장)이 의원정수 11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함
- 의장이 강창호 기획실장(이하 기획실장)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함
- 기획실장이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칙, 제 대학원 학칙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함
- 정광희 부의장(이하 부의장)이 차의과학대학교 학칙부터 심의하자고 제안함
- 기획실장이 대학 행정조직의 체계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과 학과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을 의원들에게 설명함
- 오일숙 의원이 학과명 변경에 대한 사유와 의견수렴 과정을 확인함
- 이에 참석의원들이 제2조(교육조직), 제3조(부속기관), 제4조(부설연구소), 제9조(학과, 과정), 제26조(수업연한) 개정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를 의결함
- 이정훈 기획처 대리(이하 기획처 대리)가 제26조(수업연한), 제32조(교육과정 및 교과목), 제33조의 3(특별인정학점), 제34조(수강신청), 제50조(유급), 제51조(휴학), 제57조(졸업과 학위)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함
- 박재범 의원이 제26조 제③항 개정사항이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함
- 육기환 의원이 제34조에서 재수강 제도를 강화하는 사유에 대하여 확인함
- 부의장이 재수강 및 유급은 학칙으로 명시하지 않고, 내규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
- 오일숙 의원이 제51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질의함
- 기획실장이 제51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은 광의의 표현으로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함

- 기획처 대리가 제57조에 신설된 제④항은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이며, 3월 17일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해야 함을 설명함
- 육기환 의원이 제57조에 명시된 부정한 방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질의함
- 기획처 대리가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부정한 성적 부여 등을 예시로 설명함
- 기획실장이 상기 개정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함
- 의장이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를 종결하고,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함
- 의장이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 건을 상정하고, 제안 설명을 요청함
- 기획실장이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7조의 2는 차의과학대학교 학칙 제57조와 같이 교육부 요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함
- 참석한 모든 의원이 상기 개정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의결함
- 의장이 의학전문대학원 학칙 개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함
- 의장이 제 대학원 학칙 개정 건을 상정하고, 제안 설명을 요청함
- 기획실장이 제 대학원 학칙 제62조는 보건복지대학원생의 졸업요건 완화를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함
- 최근영 의원이 졸업요건 완화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
- 기획처 대리가 보건복지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, 그 대상이 직장인이고 직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이 부담된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대학원의 졸업 요건 완화가 필요함을 설명함
- 이에 참석한 모든 의원이 상기 개정사항에 대한 원안 심의를 의결함
- 의장이 제 대학원 학칙 개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함

III. 폐회선언

- 의장은 다른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에 폐회를 선언하다.

문창진		정광희	
권성원(외과)		권성원(비뇨기과)	
육기환		박재범	
오일숙		최근영	
김동훈		배진건	
손명세			